

청소년 및 가정을 위한 종합서비스법(안)*

천 정 응**

제 I 부 행정청의 설치 및 프로그램 보조금

제 4 장 가정자원 및 지원프로그램 센터

제 II 부 아동을 위한 종합조건복지

제 1 장 기초적 출향원조 소아복지

제 2 장 보건복지보조금

제 III 부 백악관 청소년 회의

제 I 부 행정청의 설치 및 프로그램 보조금

제 4 장 : 가정자원 및 지원프로그램 센터

제 55 조 (약칭) 이 장은 “가정자원법”으로 약칭한다.

제 56 조 (조사결과와 목적) (a) 조사결과—의회
의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난 20여년간 미국가정생활의 경제

및 인구통계학상의 근본적 변화는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2) 1966년 이래 가정 밖에서 일하는 여성은 92%가 증가하였으며 양친이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 가정의 수도 50% 이상 증가했다.

(3) 오늘날 출생하는 아동의 61%는 20세 이전에 편부·편모 가정에서 살게 되며 편모가정 세가구 중 한 가구는 연방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생계유지 수준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

(4) 미국내 6세 이하 아동 4명 중 1명은 현재 연방정부기준의 생계유지수준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 Title IX—Coordinated Services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약칭 : Young American Act of 1990), 국회문서번호 4151, 동 법안은 청소년과 가정을 위한 미국 연방정부의 모든 청소년 정책사업을 종합 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의 체계화, 행정의 일원화 및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을 위한 백악관회의 등을 법제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 수립과 청소년 관계법령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는 지난번에 이어 제 I 부 행정청의 설치 및 프로그램 보조금 부분의 제 4 장 가정자원 및 지원프로그램센터와 제 II 부 아동을 위한 종합보건복지, 제 III 부 백악관 청소년회의 관계조항을 소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용어·용례를 원문과 대조·제시한다.

** 한국청소년연구원 주임연구원

(5) 지난 10년이상 부모들은 아동의 건강한 발육을 도모하고 특히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의 친권을 증진시키는 가정 자원 및 지원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하여 다른 부모들과 점차 연대하고 있다.

(6) 가정자원 및 지원프로그램의 발전을 도모하는 연방의 투자는 개개 가정과 국가 전체에 장기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b) 목 적—이 법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지향적인 가정자원 및 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촉진.

(2) 가정에 문제 상황이 심각하게 발생하기 전 해당 프로그램의 조기 실시 장려

(3) 배울 준비와 자세를 갖추고 취학하도록 아동발달을 신장시키는 부모활동 지원

제5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정 자원 및 지원프로그램”이라 함은 발전정도가 각기 다른 여러 가정에 대해 생계유지적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중심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다음 각 호에 제기한 바를 통해 부모의 능력과 행동을 증진함으로써 부모와 아동의 건강하며 긍정적인 개인적 발달을 도모한다.

(1) 부모의 기능과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고 교육하는 조치

(2) 가정으로 하여금 지역사회내의 이용가능한 형식적, 비형식적 자원과 기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

(3) 부모의 자녀양육능력을 높이고 가정의

사회적 고립과 취약성을 보상하기 위한 지원 네트워크의 창설

제58조(가정자원 및 지원프로그램 센터의 설치)

(a) 설 치—관무관은 모든 유형의 가정자원 및 지원프로그램과 관계가 있는 프로그램 정보의 수집과 기술지원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가정자원 및 지원프로그램 센터”를 국립 기관으로 보조금 또는 계약을 통해 설치한다.

(b) 기 능—제(a)항에 의해 설치된 국립센터는 가정자원 및 지원프로그램을 위한 전국적인 정보 자료의 교환센터이며 훈련, 기술지원 및 연구자료 개발센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장 효과적인 모델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포함, 모든 유형의 가정자원 및 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와 동 프로그램의 발전상태에 관한 정보보급체계를 유지·개발함

(2) 가정자원 및 지원프로그램 요원을 위한 여러종류의 연수기관과 연수과정을 개발 후원함

(3) 다른 기관의 가정자원 및 지원프로그램 실시를 지원하는 활동과 기술지원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가정자원 및 지원프로그램을 대표하는 몇 가지의 모델프로그램을 규명함.

(4) 정보의 공유 및 보급을 위하여 주 전체를 망라한 가정자원 및 지원프로그램 네트워크를 개발함.

제59조(평가) 관무관은 감사관과 공동으로 가정자원 및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하고 다

음 각호에 제기한 사항을 포함한 관련활동을 보조금 또는 계약을 통해 수행하거나 심사한다.

- (1) 진행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2) 실행전략에 주안점을 둔 과정평가
- (3) 지역의 가정자원 및 지원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단순평가 모델의 개발.

제60조(지출의 승인)

- (a) 센터의 설치-제58조를 수행하기 위해 1991회계년도에 2,300,000달러와 1992년부터 1994년까지는 매 회계년도에 필요한 상당액의 정부지출금을 허용한다.
- (b) 평가-제59조를 수행하기 위해 1990회계년도에 700,000달러의 정부지출금을 허용하며 1991년도부터 1994년까지의 매 회계년도에 필요한 상당액을 허용한다.

제II부 아동을 위한 종합 보건 복지

제1장 기초적 출향원조 소아 복지

제71조(약칭) 이 장은 “기초적 출향 원조 소아 복지 프로그램”으로 약칭한다.

제72조(취약아동을 위한 기초적 소아복지 프로그램) 공중보건서비스법 (미국법전 제42편 248 이하) 제3편 C부 말미에 다음의 조문을 신설·추가·수정한다. 제328조(취약아동을 위한 기초적 소아복지 프로그램)

- (a) 정 의-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초적 소아복지-“기초적 소아복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제기한 사항을 말한다.

(A) 예견지도, 적절한 조기치료, 면역접종 및 기타 보건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제반서비스를 포함하는 보호복지로서 이에 사회보장법 제1902조(a)(43) 및 제1905조(a)(4)(B) 조항에 의한 주기적인 조기검진, 진단 및 치료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는 종합 건강검사가 포함된다.

(B) 합병증 또는 만성질환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질병을 진단, 조기치료하는 것을 포함하는 급성질환 복지

(C) 아동에 대한 신체적 혹사, 성적 학대 또는 유기행위를 발견하기 위한 평가

(D) 특정 만성질환자 또는 장애자에 대한 지속적 보호

(2) 출향원조-“출향원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A) 소외된 취약아동의 철저한 확인

(B) 즉각적인 직접보호를 제공하고 보건 복지제도에 접근하기 위한 종합적인 평가 및 의뢰

- (b) 승 인-장관은 이 법 제정일 현재 지리적, 문화적, 재정적 및 여타 장애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19세 이하 아동에게 제(C)항에 제기한 목적이나 당해 프로그램의 실행 또는 이 두가지 모두를 위해 최상의 기초 소아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예, 뉴욕 아동 보건 프로젝트)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기 위해 공적·비영리의 사적조직, 기관, 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c) 적합한 활동—본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이 조문에 의해 사용가능한 기금을 다음 각 호에 제기한 일을 위해 실제적으로 사용한다.
- (1) 의사, 간호종사자 및 기초적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업무 종사자 등의 직원이 있는 아동외래환자시설 또는 이동의료차량
 - (2) 종합적인 보건상의 욕구를 위한 자문 협의 및 의뢰방문을 최대로 보장하는 광범위한 추수관리제도
 - (3) 출생전 보호
 - (4) 약물 남용 발견 및 예방 치료적 상담
 - (5) 직접적인 또는 관계전문가 의뢰를 통한 행동·정서장애의 평가 및 치료서비스
 - (6)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한 아동보건서비스 프로그램
 - (7) 가출청소년과 집없는 청소년에 대한 의료 서비스 및 지역사회 이송서비스 프로그램
 - (8) 의료상 특별한 필요로 하는 아동, 특히 기능장애 및 만성질환 아동을 위한 지속적, 종합적 보호 프로그램
 - (9) 병원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보호를 포함하여 필요한 이송서비스 또는 부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지역사회 보건소, 교육기관, Head Start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와 아동학대방지 프로그램 등과의 형식적 연계
 - (10) 아동과 가정에 관한 통계와 가정에 대한 추적 및 보건 복지의 계속성을 증진하는 아동과 가족의 보건복지 육

구의 특성을 포함, 자료를 수집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

- (d) 지출의 승인—이 조문을 수행하기 위해 1991 회계년도에 10,000,000달러의 정부 지출금과 이후 매 회계년도 마다 필요한 상당액을 허용한다.

제2장 보건복지 보조금

제75조(현시성 보조금) 공중보건서비스법 제III 편 D부 340(미국법전 제42편, 256) 이하에 다음의 조문을 신설·추가·수정한다.

제IV관—임신부·유아를 위한 보건서비스.

제340J조 (의료 부조 의뢰를 위한 현시성 보조금)

- (a) 정 의—이 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역사회단체—“지역사회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A) 육아상담소, 면역클리닉 또는 이동 차량

(B) 근린, 지역사회 또는 이주민 보건소.

(C) 가정자원 및 지원프로그램

(D) Head Start법 제641조(미국법전 제42편, 9836)에 의해 지정된 Head Start 기관 공인 주간 탁아보호소, 또는 지역 아동보호자원 및 이송프로그램.

(E) 순회 보건간호 프로그램

(F) 정신건강 클리닉

(G) 집 없는 부녀자와 아동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

(H) 비영리 공공병원

(I) 가족계획단체

(J) 교회, 또는 교회관련 단체

(K) 기타 임신부 및 아동관련 지역기관

(2) 국 장-‘국장’이라 함은 보건후생성의 보건자원서비스청 모자보건자원개발국장을 말한다.

(3) 확인 및 이송서비스-‘확인 및 이송서비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A) 장차 의료 부조제도의 도움을 받게 될 임신부와 아동의 확인

(B) 부녀자와 아동이 의료 부조제도의 도움을 받도록 지원·격려

(C) 부녀자·아동이 의료 부조제도의 지원을 받는데 따른 장애를 극복하도록 하는 후속 지원

(D) 부녀자·아동이 계속 의료 부조를 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접촉 유지 및 지원

(4) 의료 부조 지원-“의료 부조”라 함은 사회보장법 제1902조(미국법전 제42편 1396a)에 의한 주별 계획에 의거 제공되는 의료보호사업을 말한다.

(5) 임신부와 아동-“임신부와 아동”이라 함은 임신한 부녀자, 유아 및 19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b) 설 치-국장은 임신부와 아동이 의료 부조제도를 적용받을 자격을 갖도록 도우기 위해 현시성 프로젝트에 적합한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c) 기금의 사용-적합한 단체는 (b)항에 의해 제공되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에 제기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내 임신부와 아동에 대한 확인 및 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

타 관련 지역사회 중심 단체와 맺은 상호협력협정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일.

(2) 다음 각 호에 제기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는 일

(A) 프로그램과 연관을 갖는 지역사회내 임신부와 아동의 수

(B) 프로그램에 처음 접할 당시 의료 부조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부녀자와 아동들이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석된 제(A)호에 제기한 바 부녀자와 아동의 수

(C)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받았던 제(A)호에 제기한 바 부녀자와 아동의 수

(D)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받은 후 의료 부조를 적용받을 자격을 갖는 제(A)호에 제기한 바 부녀자와 아동의 수.

(d) 신 청-제(b)항에 의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단체는 장관이 이 조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합의·보장사항 및 정보를 포함한 지원서를 일정 시기에 소정방법으로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신청서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에 제기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2)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체의 자격조건에 대한 설명

(3) 지역사회가 다른 관련 지역사회 중심 단체와 상호협력·지원협정을 맺고 있음을 알려주는 정보를 포함하여 지원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소재

하는 지역사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정보.

- (4) 예비 임신부와 아동의 부모와의 직접 대면을 중시하고 의료 부조 지원을 받는 방법에 관하여 주로 미디어에 의존하여 알리지 않는 점을 강조하는 보장
- (e) 적합한 단체—이 조문에 의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단체는 사적·비영리 지역사회 단체를 포함한다
- (f) 연구 및 보고
 - (1) 연구—장관은 제(C)항의 (2)호에 의거 취합된 정보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미국내의 모든 유자격 임신부와 아동을 등록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료 부조 프로그램에서 확인 및 이송서비스가 임신부와 아동의 등록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이 조항에 의해 수행된 현시성 프로젝트의 영향에 관해 연구해야 한다.
 - (2) 보 고—장관은 1993년 3월 1일까지 (1)호에 의한 연구결과가 포함되는 보고서를 준비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료보장제도지원을 받은 임신부와 아동의 수를 각 수혜자들이 받는 의료보장제도지원의 수준을 낮추지 않고 증대시키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개혁을 권고한다.
- (g) 지출의 승인—이 조항을 수행하기 위해 회계년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1991년, 1992년 및 1993년 회계년도에 각각 10,000,000달러의 지출을 허용한다.

제III부 백악관 청소년 회의

제81조(약칭) 이 부분은 “1990년 백악관 청소년회의법”으로 약칭한다.

제82조(조사결과) 의회의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 조사결과—

- (1) 청소년은 미국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 다.
- (2) 청소년의 복리, 보호, 건강한 발달 및 사회에서의 적극적 역할은 국가에 필수적이다.
- (3) 청소년은 건강, 주택, 음식, 교육, 생산적 고용의 기회를 갖고 지역사회생활에 책임있게 참여할 준비를 하며 사랑과 존경과 지도를 받을 가치가 있다.
- (4) 청소년은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될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다 많이 가져야 한다.
- (5) 가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본조직이고 사회학습의 원천으로써 강화되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
- (6) 사회는 가정이 제5항에서 말한 역할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그러한 가정을 지원할 책임을 진다.
- (7) 연방정부, 주, 및 각급 자치단체들은 청소년들이 마음먹은대로 자유롭게 다음 각 호에 제기한 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원할 공동책임을 갖는다.
 - (A) 최상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 (B) 적절하고 안전한 물리적 공간
 - (C) 배울 준비와 자세를 갖추고 취학하

도록 보장하는 아동 발달의 증대

(D) 높은 수준의 교육기회

(E) 효과적인 훈련, 견습제도, 지역사회 서비스 기회, 생산적 고용

(F) 청소년을 자원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그들의 이익과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광범위한 시민적·문화적 활동 및 레크레이션 활동

(G) 효과적, 종합적이며 이용가능한 폭 넓은 지역사회 서비스

(H) 청소년들의 생활계획 및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한 진정한 참여

(8) 연방·주 및 지방정부기관·청소년단체 및 기타 자원단체가 말아하도록 계획된 청소년에 관한 종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b) 정 책—연방정부는 청소년들의 도전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실행계획과 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해 각 주와 주의 주민들과 공동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회의 정책으로 한다.

제83조(대통령과 장관의 권한) : 최종 보고

(a) 회의의 설치—대통령은 청소년을 위한 기존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제82조에 계기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실행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1991년에 백악관 청소년회의 (이하 이 부분에서는 “회의”라 한다) 를 소집한다.

(b) 회의의 계획—보건후생성장관 (이하 이 부분에서는 “장관”이라 한다) 은 지침에 의거하고 청소년·가정청(제I부에 의해 설치된) 판무관 및 다른 연방 행정부처·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동 회의를 계획·관리한다. 그러한 협력사항에는 인사조정

이 포함될 수 있다.

(c) 회의의 기능—회의는 기술, 경험, 에너지의 사용 및 청소년에 관한 여건 개선 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이 참여한다.

(1) 연방·주·지방정부의 대표

(2) 청소년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비전문가

(3) 가정 및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시민 대표

(d) 보 고—

(1) 총직—장관은 회의가 휴회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회의에서 얻은 조사결과와 권고가 있는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내용—장관은 보고서에 청소년과 가정에 관한 국가정책의 종합적·논리적인 기술과 당해 정책이행을 위한 권고안을 함께 포함하여야 한다.

(3) 공포—장관은 보고서 제출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적 실행조치를 위한 권고안과 보고서에 담겨있는 제반 권고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을 대통령과 의회내 관련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84조(행정관리)

(a) 장관의 임무—이 부분을 실행하는데 있어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필요시 여타 적절한 연방 행정부처·기관의 장에 대해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주 및 지역의 청소년과 가족 관련 기관 및 다른 적절한 단체에 대해 이들

기관·단체가 본 회의의 개최 이전에 회의를 조직·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합리적인 지원을 한다.

- (3)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배경자료를 만들고 준비한다.
- (4) 적절한 때 회의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배포한다.
- (5) 이 부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쟁적 사업에서의 임용관리에 관한 미국 법전 제5편의 단서 규정 및 분류와 지불률 계획에 관련한 제5편의 제51장 및 제53장 III절에 관계없이 필요시 추가인원을 임용한다.

(b) 자료-장관은 이 부분에 의한 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청소년 복지에 관한 적절한 통계자료와 기타 정보를 청소년관련 연방프로그램과 정책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함께 미리 회의 참가자들이 회의에 앞서 즉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c) 보조금과 계약-장관은 이 조항을 수행하는데 있어 공공기관 및 비영리의 사적 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5조(위원회)

(a) 자문위원회-장관은 회의내에 자문위원회를 연방청소년가정회의 대표자와 기타 공공기관 및 사적 비영리 단체의 대표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설치한다.

(b) 기타위원회-장관은 기술위원회를 포함, 회의를 계획, 관리, 평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타위원회를 설치한다.

(c) 위원회의 위원-

(1) 임명권자-이 조문에 의해 설치된 각 위원회에 종사할 자는 장관이 임명한다.

(2)위원회 구성-이 조항에 의해 설치된 각 위원회는 저소득집단 및 소수민족 집단 출신의 위원을 포함, 전문위원과 일반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의 일반위원의 최소한 5분의 1은 21세 이하이어야 한다.

(d) 보수-

(1) 총칙-각 위원회의 임명위원은 연방정부의 관리 또는 직원이 아니면 위원회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장관의 요구에 의해 일을 하는 동안에는 (여행시기를 포함) 미국법전 제5편의 제5332조의 GS 18 등급에 규정된 일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관이 정한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

(2) 여행비용-각 위원은 일상업무 지역을 떠나 있을 동안 미국 법전 제5편 제5703조에 의해 일용으로 고용되는 공무원 종사자에 대해 허가된 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86조(지출의 승인) 이 조항을 수행하기 위해 1991년과 1992년 회계년도에 필요한 금액의 정부지출금을 허용한다.

지원서비스 :	supportive services
서비스격차 :	service gaps
지역 사회 중심 서비스 :	community based services
사례계획 :	case planning
사례관리 :	case management
수용과 평가 :	intake and assessment
정보자료와 이송 :	information and referral
건강진단 :	health screening
중도탈락예방프로그램 :	drop-out prevention program
훈련견습제도 :	training apprenticeships
보조금총액 :	Grant Amounts
1990년 가정자원 및 지원법 :	Family Resource and Support Act of 1990
지역사회이송서비스 :	community referral services
보건 복지 :	health care
정신건강보호 :	mental health care
추수서비스 :	follow up services
핵심서비스 :	core services
조기아동발달검사 :	the early developmental screening of child
양육기술 :	parenting skills
출향원조서비스 :	outreach services
선발기관 :	lead agency
관여 프로그램 :	intervention program
가정 교습 :	scholastic tutoring
학위취득서비스 :	graduate educational degree services
영양교육 :	nutritional education
약물남용상담 및 처방의뢰 :	substance abuse counseling and treatment referral
동료상담 :	peer counseling
위기조정 :	crisis intervention
계획입안 보조금 :	planning grants
대상인구 :	target population
운영보조금 :	operational grant
지방보조금 :	local grants
고용훈련 :	employment training
부모 및 예비부모 :	parents and prospective participants

가정자원법 :	Family Resource Act
편부 · 편모가정 :	single-parent family
편모가정 :	single female heads of households
친권 (부모의 능력) :	parent competency
지원네트워크 :	supportive network
국립 가정자원 및 지원프로그램센터 :	National Center on Family Resource and Support Programs
진행중인 프로그램 :	on-going program
단순평가모델 :	simple evaluation model

〈 제II 부 〉

기초적 출향원조 소아복지프로그램 :	primary pediatric outreach and care program
취약아동 :	disadvantaged child
공중보건서비스법 :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진단 및 치료프로그램 :	diagnosis and treatment program
사회보장법 :	the Social Security Act
외래환자시설 :	outpatient facilities
이동의료차량 :	mobile medical unit
출생자보호 :	prenatal care
가출청소년 :	runaway youth
입원환자보호 :	inpatient care
현시성 보조금 :	demonstration grants
임신부 · 유아 :	Pregnant Women and Infants
의료부조의회 :	medicaid referral
육아상담소 :	a well-baby clinic
주가탁아보호소 :	day care center
보건자원서비스청 :	Health Resources and Service Administration
모자보건자원개발국 :	Bureau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and Resources Development
의료부조지원 :	medicaid assistance
확인 및 이송서비스 :	identification and referral services
현시성 사업계획 :	demonstration projects

〈제Ⅲ부〉

1990년 백악관 청소년회의법 :	White House Conference on Young Americans Act of 1990
인사조정 :	assignment of personnel
전문가 및 비전문가 :	professional and lay people
기술위원회 :	technical committee

용어 · 용례 대조

1990년 미국청소년종합서비스법 : Coordinated Services for Young Americans Act of 1990

〈 제 1 부 〉

1990년 미국청소년법 :	Young Americans Act of 1990
판무관 :	Commissioner
청소년 · 가정청 :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연방청소년 · 가정회의 :	Federal Council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보건후생성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양육보호 :	foster care
10대 대리부모사업 :	teen parenting support
실행기관 :	Action Agency
주립법인 :	independent State body
교육성 장관 :	the Secretary of Education
노동성 장관 :	the Secretary of Labor
법무 장관 :	the attorney General
주택 · 도시개발성 장관 :	the Secretary of Housig and Urban Development
운수성 장관 :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주의 행정책임자 :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State
각료급 대표 :	cabinet level representatives
지방서비스전달체계 :	local service delivery systems
공동계획 · 공동투자 :	joint planning, joint financing
기존 주립법인체 :	existing State Entity
기관간 계획 :	interagency planning
학교중도탈락율 :	drop out rates from school
재정통제 :	fiscal control
기금회계절차 :	fund accounting procedures
현직 연수 :	in-service training
보조금산정방식 :	Formula for Grants
연방부담금 :	Federal share
비연방부담금 :	Nonfederal Share
보충적 용도 :	Supplement not Supplant